

청년이사회 운영규칙

제1조(목적) 본 규칙은 한국수자원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 청년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청년이사회는 수자원 분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, 수자원 관련 기술·사회·환경적 이슈를 청년의 시각에서 조명하고, 세대 간 소통 및 협력을 바탕으로 학회 및 수자원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.

제3조(역할) ① 청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.

1. 학회의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아이디어를 개발하고, 회장단 회의 및 이사회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유·제안한다.
 2. 학회의 현안 사항 중 청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자체 워크숍, 설문 등을 통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한다.
 3. 그 밖에 회장단 또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과업을 수행한다.
- ② 청년이사는 학회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사를 청취하고, 필요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③ 청년이사는 임기 후에도 학회의 혁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구성·운영) ① 청년이사회의 참여 자격은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중 만 40세 이하(임명 시점 기준)인 회원으로 한다.

- ② 청년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.
- ③ 의장을 포함한 청년이사는 20인 이상 50인 이내로 한다.
- ④ 의장을 제외한 청년이사는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중 의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.
- ⑤ 의장은 청년이사 중에서 부의장을 선임하여 의장 업무를 보좌하게 하며 의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한다.
- ⑥ 의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청년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⑦ 청년이사회의 임기는 회장 임기에 준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청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-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청년이사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- ③ 개회 정족수는 청년이사의 과반수로 하고, 위임장을 제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. 의사(議事)의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청년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

제6조(개정) ① 본 운영규칙의 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안할 수 있으며,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
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2.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3. 청년이사 2/3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
- ② 청년이사는 ①항의 찬반 의사 표시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.